

# 심사청구서

관계기관1

김 태 완

근무처 및 직위: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 직원

정보윤리팀/정보보호정책 총괄

전화: 02-750-1263

관계기관2

이 석 래

근무처 및 직위: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직원

전자인증팀/전자서명인증관리 업무 총괄

전화: 02-405-5330

청 구 인

김 기 창

서울 성북구 안암 5가 xxxxx ([keechang@fastmail.fm](mailto:keechang@fastmail.fm))

## 청 구 취 지

1. 관계기관1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 전자서명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 및 갱신 지정하고,
2. 관계기관1과 관계기관2는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는 공인인증 업무에 대한 감독과 점검을 해태하고 있는 바,

관계기관들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 구 원 인

### 가. 관계기관들의 직무

1. 관계기관1은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 정보윤리팀 책임자입니다. 정보윤리팀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 전자서명인증정책의 수립·추진 및 공개 키(key) 기반구조의 구축·운영
- 암호 이용정책의 수립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전자거래의 안전 및 신뢰성에 관한 대책의 수립·추진
- 인터넷 관련 이용자보호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사이버공간에서의 이용자 법익 침해에 대한 대책의 수립·추진 등

2. 관계기관2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전자인증팀장으로서, 전자서명인증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자인증팀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인증기관 관리
-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운영
- 전자서명인증 기술개발·보급 및 표준화 연구

#### 나. 관계기관들의 위법한 직무 수행

3. 사단법인 금융결제원(“금결원”)은 전자서명법(“법”) 제4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결원은 다음과 같이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 i)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공인인증 역무 제공을 거부하거나(법 제7조 제1항 위반),
- ii) 금결원이 임의로 선택한 극소수의 가입자에 한하여서는 매킨토시 또는 리눅스를 사용하더라도 공인인증 역무를 제공하는 반면, 나머지 이용자나 가입자에게는 MS 사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인증역무를 제공하지 않으며(법 제7조 제2항 위반),
- iii) 공인인증서 사용에 필요한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법 제22조의2 제2항), 그 소프트웨어(“가입자 설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최상위인증기관(한국정보보호

진홍원)의 정기 점검을 받고(법 제19조 제2항), 자신이 배포자가 되어 그 소프트웨어에 코드사인(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Verisign, Thawte 등의 인증기관으로 부터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을 함으로써, 무결성(integrity)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전자서명 인증업무 지침[“지침”], 제24조 제5항), 이 설비를 제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iv) 카드사, 인터넷 쇼핑몰, 금융기관 등이 임의로 마련한 소프트웨어가 최상위인증기관의 점검도 받지 않고, 공인인증기관의 코드사인도 없이, 무단 배포되는 것을 방치, 조장, 권유하고 있습니다.

#### 4. 그 결과,

i) MS 사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인터넷 뱅킹, 온라인 쇼핑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됨은 물론, 국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할 전자민원 신청, 전자정부 회원가입 등도 불가능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법익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소프트웨어 사업자 간의 공평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법 제7조가 명문으로 규정하는 보편적 역무제공 의무 및 역무제공 차별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러한 행위를 관계기관1은 계속 방치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ii) 은행, 카드사, 쇼핑몰 등이 임의로 마련한 가입자 소프트웨어가 공인인증기관의 코드사인도 없이 마구 배포되는 현 상황은 전자거래의 안전 및 신뢰성의 근본을 허무는 위험한 일입니다. 관계기관1은, 금결원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당시에 이러한 가입자 설비를 심사받았는지(지침 제24조 제1항), 그 후에 추가되거나 변경된 것이라면,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변경 내용의 적절성을 확인”받았는지(지침 제24조 제2항)를 감독하고 관리할 직무를 부담하고 있고, 관계기관2는 공인인증기관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심사와 그 안전운영 여부에 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는바, 이를 유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항목을 바꾸어 설명드리겠습니다.

5. 인증서 처리를 위하여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와 서버측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가입자 소프트웨어” 또는 “가입자 설비”라고도 합니다. 가입자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은, 접속상대방(웹서버)이 제시하는 서버인증서를 믿어도 될지를 판단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주고(server authentication), 이용자의 전자서명을 생성하여 거래 내용의 진정성립을 뒷받침하고(form-signing), 서버에게 보내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인터넷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encryption). 전자서명 관련 법령은 가입자 설비가 갖추어야 할 자세한 요건 및 기술규격을 정하고 있고,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이 설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고(법 제 4조 제3항), 그렇게 심사를 받은 설비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지침 제24조 제1항 제2항)
6. 금결원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개의 공인인증기관들은 모두 가입자 설비를 자신이 제공하고, 그 설비에 대하여 최상위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았지만, 금결원은 인증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가입자 소프트웨어에 대한 심사는 이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sup>1</sup> 가입자 설비에 대한 심사조차 받지 아니한 금결원이 어떻게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 및 갱신 지정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하겠으나, 금결원이 가입자 설비 제공을 거부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7. 이니텍과 소프트포럼은 인증서 클라이언트와 서버측 인증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는 업체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임의로 만들어 은행, 카드사,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전 국민에게 유포시킨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에 자기 스스로를 “최상위 인증기관” 또는 “신뢰된 루트 인증기관”으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첨부서류1**(이니텍 관련 스크린 샷), **첨부서류2**(소프트포럼 관련 스크린 샷).
8. 물론, 이렇게 해 두었다고 해서, 이들 업체가 개인인증서를 마구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웹서버에 접속한 개인이 자신의 개인인증서를 서버에게 제시하면, 웹

---

1 금결원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긴 하나, 그것은 인증서 ‘관리’용일 뿐, 그것을 이용하여 가입자가 인증서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공인인증기관들은 인증서의 사용과 관리를 모두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제공하지만, 금결원은 인증서 ‘사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관계기관2는 금결원의 가입자 설비도 심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증서 ‘관리’용 소프트웨어만을 심사한 것에 불과합니다. 청구인과 관계기관2가 주고받은 전자 메일(2007.2.14 16:52 및 2007.2.14 17:07:34) 참조.

서버는 그 인증서가 유효한지를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방법(Online Certificate Status Protocol; OCSP)도 있고, 인증서 유효여부를 기록해둔 리스트(Certificate Revocation List; CRL)와 대조하여 체크하기도 합니다. 이들 사설업체가 이러한 검증 체계를 조작하기는 어려우므로, 개인인증서를 발급해 본들, 제대로 된 웹서버라면 그런 인증서를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9. 그러나, 문제는 “서버인증서”입니다. 은행, 전자정부, 온라인 쇼핑몰 등 웹사이트에 접속하였을 때, 그 서버가 제시하는 서버인증서를 믿어도 좋은지를 판단하는 일은 “클라이언트”가 합니다. 바로 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배포한 업체들이 자기 자신을 최상위 인증기관으로 그 소프트웨어에 등록해 두었기 때문에, 이 업체가 발급하는 “서버인증서”는 온 국민이 “무조건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이니텍의 경우는 2025년까지, 소프트포럼의 경우는 2033년 까지).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만이 우리나라의 최상위인증기관이 되도록 규정한 전자서명법 제25조에 어긋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가입자 소프트웨어가 준수해야 할 요건에도 어긋나고(공인인증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규정”), 9.3.1), 인증체계의 기술적, 논리적 구조와 보안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결코 있어서는 아니될 일입니다.
10. 물론 서버인증서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openssl genrsa ; openssl req new; openssl x509 req*** 등으로 시작하는 명령어 세개만 실행하면 인증서는 누구든지 순식간에 발급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위험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아무나 발급한 서버인증서를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믿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에 최상위 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들 회사가 발급하는 서버인증서는 그 클라이언트가 무조건 신뢰하게 되고, 바로 이것이 엄청난 보안위험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11.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공무소 또는 은행이 국민에게 신원확인을 요구하고, 각종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요구가 수사상 필요하다거나, 민원처리에 필요하다거나, 은행거래에 필요하다면, 국민은 그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를 요구하는 자를 믿기 때문이고, 그렇게 믿는 이유는 그자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소프트포럼, 이니텍 등이 마구 배포하여 지금 온국민의 컴퓨터

터에 깔려있는 소프트웨어는, 이처럼 정보를 요구하는자(웹서버)의 신원을 확인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소프트웨어(클라이언트)입니다. 이 클라이언트를 만든 사설 업체가, 자신이 발급하는 신분증(서버인증서)는 무조건 신뢰되도록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설계하여 전국민에게 배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업체는 경찰, 관공서, 은행은 물론, 어떤 웹서버의 신분증이라도 발급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설치한 소프트웨어는 그 신분증을 무조건 신뢰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들 업체의 비밀키가 유출된다면(비밀키만 있으면 이들 업체 명의로 신분증을 무한정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온 나라의 인증 체계는 회복불능의 혼란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12. 그렇기 때문에, 규정은 공인인증기관의 비밀키가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여부에 대한 매우 엄격한 물리적, 전자적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규정, 제2장, “8. 보호설비”), 이 요건들은 최상위 인증기관에도 물론 적용됩니다(법 제25조 제2항). 이니텍, 소프트포럼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3.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상의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증명서(개인 또는 법인)와 같은 것입니다. 공공성과 철저한 관리, 감독이 보장되어야 할 이러한 전자문서를 사설 업체가 마구 발급해도 일반 이용자가 전혀 알아차릴 수 없도록 조작해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인터넷을 통하여 전 국민의 컴퓨터에 배포, 설치되어 버린 이 사태는 “국가적 재앙”에 버금가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 업체가 무슨 의도로 자신의 인증서를, 그것도 최상위 인증기관 인증서가 누리는 신뢰 수준으로, 가입자 소프트웨어에 등록시켜 전 국민에게 배포되게 하였는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14. 금결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인인증기관들이 배포하는 가입자 설비는 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결원은 우리나라 공인인증서의 70%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15. 이 일이 저질러지는 동안, 우리나라의 공인인증제도를 관리하고 감독할 직무를 담당하는 관계기관1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계기관1은 시중 은행이 최상위 인증기관의 심사도 받지 않고 임의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그것은 “공인인증서 관련 S/W”가 아니라, 시중 은행, 소평몰 등이 사설인증 용도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관계기관1이

2006.7.13. 18:58:52 청구인에게 보낸 이메일 회신)

16. 온 국민은 그동안 “공인인증 제도”를 이용한다고 믿고, “공인전자서명”으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받을 수 있으며(법 제3조 제2항),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신원확인  
에 갈음할 수 있다고(법 제18조의2) 믿어왔으나,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사실인증”, “사실전자서명”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관계기관1은 늦어도  
2006.7.13. 경에는 알고 있었습시다.
17. 또한, 모든 시중은행도 “공인인증”을 사용한다고 고객에게 안내해 왔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대한민국 전자정부도 전자민원 신청에는 “공인인증”이 필요하다면서, 클  
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배포해 왔습시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지금껏 배포  
한 소프트웨어 역시, 사설업체가 임의로 만들어 전자정부 웹서버를 통하여 배포하  
게 한 것입시다. 그 소프트웨어에도 이 사설 업체가 최상위 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시다.
18. 그 뿐 아니라, 이미 폐업한 한빛은행, 정체가 불분명한 BizMRO 등의 인증서도 최상  
위 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고, 중개인증기관에는 더 많은 잡다한 인증서들이 마  
치 “인증기관 인증서”인 것처럼 등록되어 있습시다. 이들 중 어느 한 곳이라도, 그  
인증서를 만들때 사용되었던 비밀키가 유출된다면, 그 비밀키를 입수한 자는 마음  
껏 서버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고, 그런 악의적 웹서버가 제시하는 서버인증서에 대  
한 방어수단이 전혀 없도록 이들 사설 보안업체가 온 국민을 ‘무장해제’ 시켜두고  
있는 셈입시다.
19. 이니텍과 소프트포럼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인증 기술의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시중은행, 대한민국 전자정부 등을 기망하여, 사실인증 설비에  
불과한 자신의 소프트웨어가 마치 공인인증에 사용되는 가입자 설비인 것처럼 이를  
배포되게 함으로써, 공인인증 및 공인전자서명 업무의 수행을 방해한 것입시다.(위  
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20. 관계기관1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고의로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며,

관계기관<sup>2</sup>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금결원이 공인인증에 적용하는 설비에 대한 점검을 지금까지 해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시중은행이 마구 배포하는 가입자 소프트웨어는 “공인인증 관련 소프트웨어”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시중 은행은 모두 금결원의 등록대행기관입니다(지침 제2조 제6호). 따라서 이들은 금결원의 이행보조자로서, 금결원을 대신하여 이처럼 위법하고 위험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다. 관계기관들의 책임을 가중하는 사유

21. MS사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이나 마찬가지로인 “공인”인증서의 이용을 못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2002. 부터 무수히 많은 항의, 민원, 언론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전자정부 서비스 역시 공인인증서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사의 제목은 흔히 전자정부를 언급하지만, 그 내용은 결국 공인인증 서비스에 관한 것입니다. 이점은 관계기관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 2002.3.경, 함께하는 시민행동(“시민을 위한 전자정부 만들기”)
- 2002.4.21. 한겨레 (“정부 홈페이지 'MS 소프트웨어' 위주”)
- 2002.4.22. 연합뉴스 (“정부홈페이지 절반 특정브라우저 사용”)
- 2002.11.14. 인터넷 블로그 (“전자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 2002.12.23. 오마이 뉴스(“전자정부는 MS 익스플로어 전용?”)
- 2003.1.30. 한국 과학기술인 연합 공식성명 (“표준화를 거부하는 전자정부는 누구의 것인가?”)
- 2003.6.13. 시민정보미디어센터 (“'윈도' 아니면 통행금지”)
- 2004.8.12 인터넷 토론 글타래(“국내 웹 표준화 운동의 전개”)
- 2004.10. 인터넷 토론 글타래 (“IE가 관습 브라우저가 되기 전에”)
- 2005.7.3 매킨토시 사용자 포럼(“액티브 X만 지원하는 전자정부.. 항의 합시다”)

22. 이러한 항의와 문제제기의 연장선 상에서, 2006.5.8. 청구인도 800여명의 참여자들과 연명으로 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정식 민원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23. 일부 가입자에게는 리눅스, 매킨토시를 사용하더라도 공인인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MS 운영체제가 아니더라도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거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24. 국내 보안업체들도 이미 윈도, 리눅스, 매킨토시 등 운영체제에 구애받지 않고 공인 인증서를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개 시 연까지 마치고, 누구든 사서 써주기만을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2억원이 채 못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기능과 성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는 공개소스로도 이미 개발되어 전세계에 무료로 제공되고도 있습니다. 약간의 수정(한글 지원)을 거쳐 즉시 배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5. 전자서명법 제7조는 해석의 어려움을 남기는 복잡, 난해한 규정이 아닙니다. 신한 은행 고객에게는 매킨토시 용 소프트웨어도 주고, 농협 고객에게는 리눅스 용 소프트웨어도 주면서, 나머지 이용자(다른 은행 고객)들에게는 이들 소프트웨어 제공을 차별적으로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것입니다.

26. 관계기관들의 직무 유기로 인하여, 우리 전산환경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수준의 극심한 MS의존 상태에 있습니다. MS 윈도에 편향된 우리의 전산환경이 국가안보(정보 보안)를 위협하고, 막대한 국부 유출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황폐화를 초래한다는 점은 [2003.9.26. 정보통신부 스스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2007년까지 국내 데스크탑 20%, 서버 30%를 공개 SW 기반으로 교체할 경우 연간 약 3천 7백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Open Standard 지향의 공개 S/W의 특성을 살려 국가 주요정보시스템의 안전·호환성 확보 및 플랫폼 차원의 기술개발로 기술혁신은 물론 인력양성을 통한 국내 S/W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27.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기관이 부당하게 역무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차별하는 경우, 벌칙 규정을 두고 있고(제34조 제1항 제2호),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제11조 제5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인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2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금결원의 위법한 차별행위를 관계기관이 잘 알면서도 이를 묵인, 방치한 것은 자신의 직무를 고의로 유기한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28. 관계기관들의 직무 유기는 일부 이용자의 법익을 침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공인인증 체계의 신뢰성을 그 뿌리(root)에서부터 위협하는 사태를 발생시켰

습니다. 사실 보안 업체가 자신을 최상위 인증기관(Root Certificate Authority)으로 무단 등록해둔 소프트웨어를 공인인증기관의 코드사인도 없이 배포하여 전국민의 컴퓨터에 설치해 버렸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국민은 물론 정부도 공인전자서명이라고 믿어왔던 것이, 실은 법령이 정한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소프트웨어로 생성시킨 “사실전자서명”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29. 공인인증 체계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은 전문적인 컴퓨터 지식이 없더라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하면, 화면 오른쪽 아래에 생겨나는 자물쇠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것을 열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인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를 담당하고, 우리나라 “전자서명 인증정책의 수립·추진 및 공개 키(key) 기반구조의 구축”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기관<sup>1</sup>이 이 사실을 몰랐을리는 없습니다. 공인인증기관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심사와 점검을 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기관<sup>2</sup>가 이 사실을 몰랐을 수는 없습니다.

30. 더 나아가, 이 사실을 알았건 몰랐건 간에, 금결원이 최상위인증기관의 점검을 받고, 자신이 코드사인을 하고(그렇게 해야, 만일 그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 소재가 분명해 집니다) 배포해야 할 가입자 설비를, 시중 은행이 마구 배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관계기관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그동안 고의로 방치하고 직무를 유기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1. “몰랐다”는 주장도 한계가 있습니다.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인식(cognition)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알고자 하는 실천적 의지(will)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것 자체가 윤리적 비난의 정당한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모를 수 없는 정황이 있음에도 “몰랐다”는 주장을 고집하는 경우에는 윤리와는 다른 차원(법적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기관들의 직무는 일정 수준의 컴퓨터 보안 지식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습득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것 자체가 직무 유기로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조금이라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몰랐다”는 주장으로 자신의 모든 잘못을 덮으려 할 것입니다.

32. 본 사안은 컴퓨터범죄 수사 전문인력의 협조를 얻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공인인증체계의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기관들의 위법한 직무 수행(유기)가 어떤 규모의 국가적 손실을 낳게 되는지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청구인의 이해관계 소명**

33. 청구인은 1997 이래로 리눅스 운영체제를 상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결원은 농협 고객에게만 리눅스 운영체제에서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는 리눅스 운영체제로는 공인인증 역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관계기관들은 이를 알고도 방치해 왔으므로,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2006.1). 그러나, 청구인은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익숙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안고 있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 때문에 리눅스를 지금도 상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들이 금결원의 위법한 차별 및 인증역무 제공 거절을 방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매우 큰 불편과, 자신이 원하지 않는 운영체제를 사용할 것을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34. 청구인이 계좌를 개설한 은행은 이니텍이 배포한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으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인인증서 사용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그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프트웨어에는 청구인의 동의도 받지 않은 이니텍이 자신을 최상위 인증기관으로 등록해두고 있고, 이것은 매우 심각한 보안 위험을 초래합니다. 청구인은 사설보안 업체에 불과한 이니텍을 인증기관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증서를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제거하고자 하였으나, 이니텍의 소프트웨어는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때마다, 악의적 서버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35. 관계기관들의 위법한 직무 수행(유기)의 결과, 청구인은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고자 이 건 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2006.2.14.

청구인: 김 기 창

감사원장 귀중

심사청구서 경유 기관: 정보통신부 장관